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주 올버니

2025년 8월 6일

증명서

뉴욕주 내 각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본 주에서 실시되는 총선에서 제안: 헌법 개정안 제 1호가 상정되어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됨을 본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헌법 개정안 제 1 호 전문

상원 및 하원 공동결의안

(하원법안 7454 / 상원법안 5227)

에섹스 카운티 소재 반 호벤버그 산 올림픽 스포츠 단지과 관련하여 헌법 제 14 조 제 1 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제 1 항. (상원이 동의할 경우) 헌법 제 1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함:

제 1 항. 현행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을 구성하는 현재 주가 소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토지는 영구적으로 자연림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는 임대, 매각 또는 교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 법인 소유로 이전할 수 없으며 그 위에 있는 목재를 판매, 반출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주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헌법 개정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승인된 고속도로를 건설/완공/유지 관리하는 것, 글렌스 폴스 시 인근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로부터 북쪽으로 레이크 조지 및 워렌스버그 마을, 사우스호리콘 및 포터스빌 소구역 인근을 거쳐, 슈룬 호 서측을 따라 슈룬 소구역 인근까지, 이어서 슈룬 폭포, 슈룬 강, 노스 허드슨 인근을 거쳐 마코미스 산 동측, 뉴러시아 소구역 동측, 엘리자베스타운 마을 동측을 지나, 타워스 포지 소구역 인근과 포크오문샤인 산 동측을 거쳐, 키즈빌 마을 및 플래츠버그 시 인근까지 연장되는 연방 지원 주간고속도로 502 호를 연방 기준에 맞추어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것(다만, 위 구간의 토지 수용은 주 산림보호구역 토지 총 300 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에섹스 카운티 화이트페이스 산 북동 북서 사면에 폭 30 피트에서 200 피트 이내의 스키 코스(부대시설 포함) 총연장 25 마일까지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것(다만, 그중 폭 120 피트를 초과하는 스키 코스의 길이는 5 마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얼스터 및 델라웨어 카운티 벨레에어 산 사면에 폭 30 피트에서 200 피트 이내의 스키 코스(부대시설 포함) 총연장 25 마일까지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것(다만, 그중 폭 120 피트를 초과하는 스키 코스의 길이는 2 마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워렌 카운티 고어 산 및 피트 게이 산 사면에, 폭 30 피트에서 200 피트 이내의 스키 코스(부대시설 포함) 총연장 40 마일까지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것(다만, 그중 폭 120 피트를 초과하는 스키 코스의 길이는 8 마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한 곡선 도로 및 경사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 주 고속도로 총연장 50 마일 이내를 이설/재건/유지·관리하는 것(다만,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산림보호구역 토지는 총 400 에이커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설되는 각 구간의 길이는 1 마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라낙 레이크 마을 경계에 인접한 산림보호구역 토지 10 에이커를 폐기물 처리 공용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 마을에 양도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사라낙 레이크 마을은 리처즈 측량구역 제 11 타운십 113 번 구획 북부 로어링 블록에 소재한 마을 소유의 순수 산림지 30 에이커를 주에 양도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는 피세코 공항의 활주로 및 착륙장 연장을 위한 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리에타 타운 내에 있는 산림보호구역 토지 28 에이커를 해당 타운에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아리에타 타운은 타운 내에 소재한 자치 소유 토지 30 에이커를 주에 양도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전에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주는 토지 소유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밀턴 카운티의 토튼 앤 크로스필드 퍼체스 제 2, 제 3 타운십과 무스 강 토지 제 9 타운십에 위치한 산림보호구역 토지 약 8,500 에이커를 International Paper Company 에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International Paper Company 는 해당 타운십 및 카운티 내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토지(에어커 단위)를 주에 양도하여 산림보호구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 경우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와 가치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에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주는 국립 역사유적지 등재 역사 건물군을 단일 소유 및 관리하에 재통합하여 그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Sagamore Institute Inc.(비영리 교육기관)에 Sagamore Institute Inc.의 부지와 인접하고 해밀턴 카운티 롱레이크 타운 라켓 호수 마을 인근의 세가모어 로드 에 위치한 약 10 에이커의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환으로 Sagamore Institute Inc.는 주에 애디론덱 공원 내에 위치한 약 200 에이커의

자연림 토지를 양도하며, 이 토지는 산림보존구역에 편입된다. 단,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과 가치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주가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자연적 역사적 특성이 적절한 계약상 약정과 제한을 통해 보존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이 주와 Sagamore Institute Inc.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는 피세코 공항 활주로 및 착륙장 연장과 해당 활주로 주변의 안전 구역 유지를 위한 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리에타 타운 내에 있는 산림보호구역 토지 50 에이커를 해당 타운에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아리에타 타운은 플레즌트 호에 위치한 토튼 앤 크로스필드 퍼체스 2 번 구획 제 2 타운십 내에 위치한 순수 산림지 53 에이커를 주에 양도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에식스 카운티 킨 타운 내의 약 12 에이커 산림보존구역 토지를 해당 타운 소유의 공영 묘지를 위한 공용 부지용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대가로 킨 타운은 약 144 에이커의 토지와 주에 양도될 토지에 인접한 강바닥을 포함한 해당 타운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지역권)을 함께 양도한다. 단,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와 가치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보존구역 외에는 식수용 관정과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부지가 없고 해당 관정이 식수 수질 기준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는 해밀턴 카운티 롱레이크 타운 라켓 호수 마을의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용 관정 및 부대시설 부지용으로 해당 타운에 속한 산림보존구역 토지 1 에이커를 양도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롱레이크 타운은 해밀턴 카운티에 위치한 최소 12 에이커의 토지를 주에 양도하여 산림보존구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토지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와 가치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라켓 호수 지표 저수지는 식수 공급원으로서 폐쇄되어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를 통과하는 주도 56 인접 산림보존구역 내 제 5 타운십 1, 2, 5, 6 번 구획에 위치한 최대 6 에이커의 부지를 National Grid 에 양도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National

Grid 가 46kV 송전선을 신설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부지이다. 그 대가로 National Grid 는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내 자사 소유 산림지 최소 10 에이커를 주에 양도해 산림보존구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 경우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와 가치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해밀턴 카운티 롱레이크 타운에 위치한 토튼 앤 크로스필드 퍼체스의 타운십 40 에서 주와 민간 소유자 간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소유권 합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조건으로 주 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매입된 토지 중에 애디론덱 공원 내 산림보존구역에 편입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주에 양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가 해당 합의 대상인 제 40 타운십 토지보다 산림보존구역에 순편익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는 NYCO Minerals, Inc.가 에섹스 카운티 루이스 타운에 위치한 스타워스 측량구역 8 번 구획 내 약 200 에이커의 산림보존구역에서 규회석 매장량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전액 자사 부담으로 광물 탐사 작업을 실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회사는 해당 탐사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감정 목적으로 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권 이전 전에 교환 대상지에 대해 입법부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 정부는 이후 8 번 구획을 NYCO Minerals, Inc.에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NYCO Minerals, Inc.는 동일하거나 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주에 양도하여 산림보존구역에 편입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부는 주가 양도받는 토지의 가치가 주가 양도하는 토지의 가치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가 양도받는 토지의 공시가액 총액은 1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NYCO Minerals, Inc.가 해당 8 번 구획에서의 모든 채광 작업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원상 복구한 뒤 그 소유권을 뉴욕주에 넘겨 산림보존구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8 번 구획이 NYCO Minerals, Inc.에 양도되지 않더라도 NYCO Minerals, Inc.는 본 항에 따라 해당 구획에서 수행된 광물 탐사 작업으로 훼손된 면적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토지를 주에 양도하여 산림보존구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토지의 가치가 광물 탐사 작업으로 훼손된 토지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250 에이커의 산림보존구역 토지를 보건 및 안전 목적 토지 사용 허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고, 입법부가 마련한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타운, 마을, 카운티는 입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건 및 안전 목적 토지 사용 허용 면적을 활용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설 및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부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목록에 등재되고, 매년 제설 및 정기 유지관리되는 카운티 도로 및 마을 도로에서의 교량 위험요소 또는 안전 문제 해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설 및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부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목록에 등재되고, 매년 제설 및 정기 유지관리되는 카운티 도로 및 마을 도로에서의 위험한 곡선 도로 및 경사로 제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설 및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부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목록에 등재되고, 매년 제설 및 정기 유지관리되는 카운티 도로 및 마을 도로의 이전, 재건, 유지관리(단, 이전되는 도로 구간은 1마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음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음용수 관정 및 부대시설의 설치(단, 해당 관정은 주 도로, 카운티 도로, 마을 도로로부터 530 피트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도로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설 및 등록되어 있고, 교통부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목록에 등재되며, 매년 제설 및 정기 유지관리되어야 함) 그러한 보건 및 안전 목적 토지 사용 허용 면적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주는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될 250 에이커의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토지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에릭스 카운티 노스 엘바 타운에 위치한 반 호벤버그 산 올림픽 스포츠 단지 내 1,039 에이커의 산림보호구역 토지에 국제 대회, 훈련,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르딕 스키 및 바이애슬론 코스의 건설, 운영, 유지가 허가되며, 해당 코스 및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323 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상쇄 조치로 주는 최소 2,500 에이커의 산림지를 취득해 애디론덱 공원 내 산림보호구역에 편입해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토지의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 2. (상원이 동의할 경우) 상기 개정안을 2025년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의 승인을 받도록 선거법 규정에 따라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설명 - 밑줄 친 부분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고, 대괄호 [] 안의 내용은 삭제될 구 법률이다.

헌법 개정안 제 1 호 요약

에섹스 카운티 산림보호구역 내 올림픽 스포츠 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

본 제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내에 새로운 노르딕 스키 및 바이애슬론 코스 조성을 허가합니다.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면 헌법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시설이 애디론덱 산림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노스엘바 올림픽 스포츠 단지의 일부 구역입니다. 노스엘바는 뉴욕주 에섹스 카운티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최대 면적은 323 에이커입니다.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은 1,039 에이커입니다. 본 토지 이용은 상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2,500 에이커의 신규 산림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됩니다. 이 상쇄 조치는 뉴욕주 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 1 호 제출 형식

에섹스 카운티 산림보호구역 내 올림픽 스포츠 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

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스키 및 관련 코스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1,039 에이커입니다. 주 정부는 애디론덱 공원에 2,500 에이커의 신규 산림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찬성표는 애디론덱 산림보호구역 내 신규 스키 코스 및 관련 시설 개발을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표는 해당 부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헌법 개정안 제 1 호'의 상기 본문이 뉴욕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보관 중인 것으로 인증된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본 문서는 2025 년 8 월 6 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와 직인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s/ Kristen Zebrowski-Stavisky

Kristen Zebrowski Stavisky

공동 사무처장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s/ Raymond J. Riley III

Raymond J. Riley, III

공동 사무처장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